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1555

2017. 2. 27 도시계획관리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6년 11월 30일, 김태수 의원 발의(찬성자 11명)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2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7.2.27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김태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위원 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를 명확히 규정함

나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에 대한 규정을 둠 (안 제12조제2항)
-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 (안 제12조제4항)
-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함 (안 제12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(별첨)

나.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규정과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6 년 11월 30일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-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을 규정하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

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1항1)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이해됨.

- 또한,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규정과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・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, 담당부서에서도 현재는 이 위원회²⁾를 상설화하여 구성・운영할 계획이 없는 바, 비상설 위원회로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운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판단됨. (붙임참고)

<수정의견(비상설 위원회)>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공동주택관리위원회) ①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법률 및 회계의 자문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	제12조(공동주택관리위원회) ①
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수 있다.	다만,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요 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, 회의종료 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.
<신 설>	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의 구성·운영기간으로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)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위원회의 설치절차 등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.

- 1. 설치 목적·기능 및 성격
- 2. 위원의 구성 및 임기
- 3. 존속 기한(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
- 4. 위원의 결격사유, 제척·기피·회피(시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인가·허가, 분쟁 조정 등 특히 공 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)
- 5. 회의의 소집 시기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
- 6.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
- 7. 분과위원회,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)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한 위원회는 2016년을 기준으로 166개이며 이중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19개(11.4%), 회의개최 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는 총 46개(27.7%)의 위원회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.(2016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(민관협력담당관) 참고)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**관련 1555**

제안일자 : 2017. 2.27 제 안 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현재 상설화하여 구성·운영할 계획이 없으므로 비상설위원회로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운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

2. 수정 주요내용

- 공동주택관리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해산함(안 제12조제1항)
-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구성·운영기간으로 함(안 제12조제4항)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2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,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.
- 안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·운영기간으로 한다.
- 안 제12조의2 중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2조(공동주택관리위원회)	제12조(공동주택관리위원회)	제12조(공동주택관리위원회)
①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	① (현행과 같음)	①
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법률		
및 회계의 자문 등을 위하		
여 공동주택관리위원회(이		
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		
수 있다.		: <u>다만, 위원회는 회</u>
		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
		<u>구성·운영하고, 회의종료</u>
		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.
② 위원회는 법률가, 회계전	②	② (개정안과 같음)
문가, 시민단체, 공무원 등		
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		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원으로 <u>구성한다</u> .	<u>구성하며 위원장과</u>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 출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	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 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 운영기간으로 한다.
<신 설>	제12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1.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2.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때 3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 를 원할 때 4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	제12조의2(위원의 위촉 해 제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1. ~ 4. (개정안과 같음)
제18조(사무의 위탁) ① (생략)	제18조(사무의 위탁) ① (현행 과 같음)	<개정안과 같음>
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연 <u>1회</u>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, 필요 한 경우 수시로 지도·점검 할 수 있다.	②	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,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 산된다.

- 제12조제2항 중 "구성한다"를 "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·운영기간으로 한다.
-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제12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
 - 2.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 - 3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
- 4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제2항 중 "1회"를 "한 번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공동주택관리위원회) ① 시장은 맑은	제12조(공동주택관리위원회) ①
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법률 및	
회계의 자문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위	
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
	<u>다만,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</u> 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, 회의종료 <u>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.</u>
② 위원회는 법률가, 회계전문가, 시민단체,	② 워-완화는-법률과,-화쾌권-문과,-서판단채,
공무원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	공무-완-등-울-포함철-15명-아내의-위-원-으로
<u>구성한다</u> .	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
	서 선출한다.
<신 설>	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
	<u>구성·운영기간으로 한다.</u>
<신 설>	제12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	1.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2.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 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작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
제18조(사무의 위탁) ① (생 략)	제18조(사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, 관계공무	② 거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, 관체공무
원으로 하여금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	원으로 하여급-사업바-자원해-관천-사항에
대하여 연 <u>1회</u>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,	대하다-언 한 번 역상-장카점점을-살사하
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・점검할 수 있	고;-필요한-경우-수사로-자도점검찰-수
다.	슀뒥.